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우120 1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번지 / 전화 (02)3907-323 / FAX 363-5258

문서번호 과정 58440-163/

시행일자 1993. 08.

(경유)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1707보존			
1993. 8. 2. 결재	부 시 장	328	
1993. 8. 2. 부 부 장			기획관리실장
1993. 8. 2. 차 장		1111	
1993. 8. 2. 업무부장			법무 담당관 실사관 과정과장(기안) 박병만

제목 서울특별시급수조례증 개정

1.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수도수요와 환경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증 개정조례안 1부. 끝.

(제 2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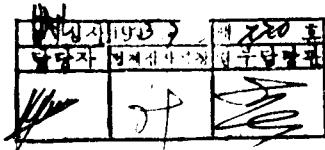
제목 서울특별시급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례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안을 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공 고 (안)



◎ 서울특별시공고 제 275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3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수도수요와 환경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시립위탁시설의 급수업종 적용을 일부조정하는 등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양수기의 명칭을 수도계량기로 변경

나.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善于

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 시립위탁시설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급수탑, 공설소화전의 급수업종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9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3907 - 321 - 3)로 문의